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0. 4.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문화체육관광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문화체육관광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구입비용과 보관상 문제로 캠핑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구민들에게 캠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캠핑장비 대여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에 따라 캠핑장비 대여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발맞추어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에 다자녀가정 및 병역명문가 조항을 추가하고, 시설예약자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5조제2항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달서구 내 병역명문가와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였고,

- 안 제7조제2항에 시설예약과 관련하여 사용료 납부기한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안 별표에 캠핑장비 대여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0. 2. 21일부터 3.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0. 3.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들에게 캠핑문화 기회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82022
----------	---------

제출연월일: 2020. 4. 9.
제출자: 달서구청장
(문화체육관광과장)

1. 제안이유

○ 캠핑장비 대여사업 시행에 필요한 대여료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달서구 내 병역명문가와 다자녀가정에 감면혜택을 주는 한편, 시설 예약자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달서구 내 병역명문가와 다자녀가정 추가
(안 제5조제2항)

나. 시설예약과 관련하여 사용료 납부기한에 맞도록 문구 수정(안 제7조제2항)

다. 캠핑장비 대여료 조항 추가(안 별표)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2)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7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2. 21.~3. 12.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생략(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제7조제2항 중 “사용일 전일”을 “다만, 사용예정일 전일 및 전전일”로, “사용 일에”를 “사용예정일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시설 사용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사용기준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성수기
카라반(6~8명)	1개소 / 1일	100,000	140,000
오토캠핑장		30,000	35,000
일반캠핑장 (데크, 숲속)		20,000	25,000

1. 주 중: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와 공휴일
2. 주 말: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3. 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
4. 정원기준: 만 7세 이상 8명까지(초과 시 1명당 5,000원 추가징수)
5. 1일 사용시간: 사용일 14:00 ~ 다음 날 12:00
(단, 카라반은 사용일 15:00 ~ 다음 날 12:00)
6.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가. 시간당(카라반 10,000원, 그 외 시설 5,000원)
 - 나.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7. 캠핑장비 대여 시 추가요금 징수(1일 35,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③ ~ ⑤ (생 략)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u> <u>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 ① (생 략)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 (<u>사용일 전일</u> 에 예약신청하는 경우 2시간 이내, <u>사용일</u> 에 예약신청하는 경우 1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를 하여야 하며, 이로써 시설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만, 사용예정일 전일 및 전전일</u> ----- <u>사용예정일에</u>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달서별빛캠프 캠핑장 시설 사용요금표(제4조 관련)</p> <p>(단위: 원)</p>				<p>[별표]</p> <p>달서별빛캠프 캠핑장 시설 사용요금표(제4조 관련)</p> <p>(단위: 원)</p>			
시설명	사용기준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성수기	시설명	사용기준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성수기
카라반(6~8명)	1개소 / 1일	100,000	140,000	카라반(6~8명)	1개소 / 1일	100,000	140,000
오토캠핑장		30,000	35,000	오토캠핑장		30,000	35,000
일반캠핑장 (데크, 숲속)		20,000	25,000	일반캠핑장 (데크, 숲속)		20,000	25,000
<p>1. 주 중: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와 공휴일</p> <p>2. 주 말: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p> <p>3. 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p> <p>4. 정원기준: 만 7세 이상 8명까지(초과 시 1명당 5,000원 추가징수)</p> <p>5.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p> <p> 가. 시간당(카라반 10,000원, 그 외 시설 5,000원)</p> <p> 나.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p>				<p>1. 주 중: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와 공휴일</p> <p>2. 주 말: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p> <p>3. 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p> <p>4. 정원기준: 만 7세 이상 8명까지(초과 시 1명당 5,000원 추가징수)</p> <p>5. <u>1일 사용시간: 사용일 14:00 ~ 다음 날 12:00</u> <u>(단, 카라반은 사용일 15:00 ~ 다음 날 12:00)</u></p> <p>6.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p> <p> 가. 시간당(카라반 10,000원, 그 외 시설 5,000원)</p> <p> 나.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p> <p>7. 캠핑장비 대여 시 추가요금 징수(1일 35,000원)</p>			

【 관 계 법 령 】

□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조례

제5조(우대)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달서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5.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신설 2019. 3. 4.]
- ③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달서구에 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8. 9. 21.)

제7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예약 및 결제를 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달서구민은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시설의 100분의 50범위 내에 한하여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달서구민이 아닌 자는 그 다음 날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 (사용일 전일에 예약신청하는 경우 2시간 이내, 사용일에 예약신청하는 경우 1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 결제를 하여야 하며, 이로써 시설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21.)

- ③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시설사용 전에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1명당 최대 예약가능 시설의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21.)